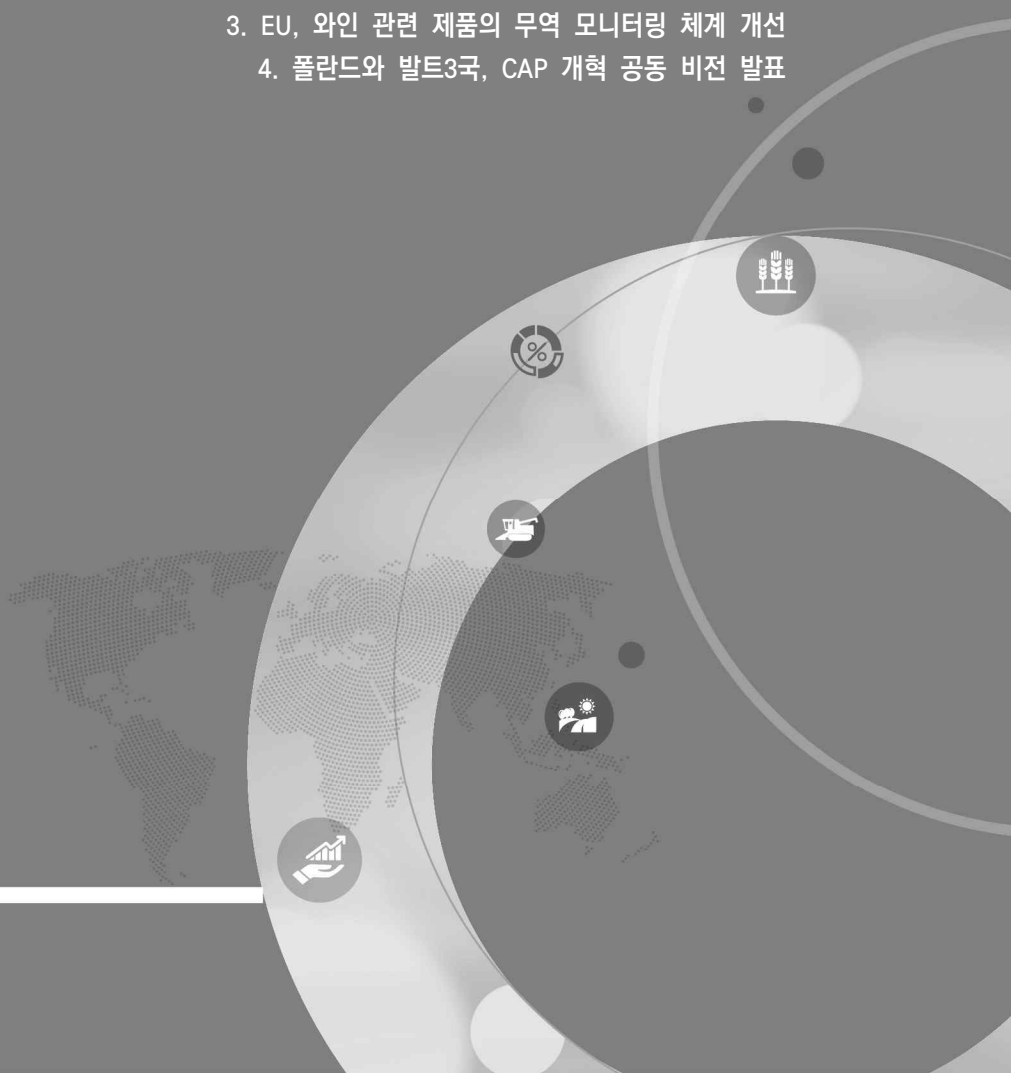
Part 5
국제 농업 정보

1. EU, 유기농식품 관리 체계 감사 실시
2. EU 집행위원회, 동물복지 지원 센터 설립
3. EU, 와인 관련 제품의 무역 모니터링 체계 개선
4. 폴란드와 발트3국, CAP 개혁 공동 비전 발표







EU, 유기농식품 관리 체계 감사 실시

❍ EU 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은 소비자들에게 유기농식품의 실제 유기농법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EU의 유기농식품 관리체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ECA는 유기농 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입 등 유기농식품 공급시스템 전반을 검토하고, 2012년에 실시한 최종 감사 이후 개선 여부를 평가할 예정임.

- 특히, EU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들이 이전 감사를 통해 발견한 관리체계의 약점들을 보완하거나 개선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할 예정임.

❍ 또한 EU 회원국 이외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농식품의 수입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 모니터링할 예정임.

- 관련 자료는 현행 법률, 국가 통제 계획, 집행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분석뿐만 아니라 EU 기구(EU institutions) 및 통제기구(control bodies)와 특정 회원국(불가리아, 체코 공화국)의 대표자들과의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할 것임.

❍ 이 보고서는 현재 동물복지 정책과 올해 계획 중인 식품안전 관련 내용과 함께 EU 식량체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감사 보고서로 2019년 초에 발간될 예정임.

❍ 유기농식품은 실험실에서의 테스트나 물리적 실험을 통해 정확히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EU집행위원회가 감독하는 인증시스템을 통해 유기농식품의 상태를 확인함.

- EU 회원국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검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기농으로 분류된 식품들이 실제로 올바른 방법으로 생산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U 유기농 식품법

❍ ECA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 작업과 관련 법령의 특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기농식품에 관한 백서(background paper)를 발간하였음.

- 백서의 서두에서는 “유기농 생산은 최적의 환경관리방안(best environmental practices)과 높은 수준의 생물의 다양성, 천연자원 보전 및 높은 동물복지 기준 적용 모두를 결합한 농장 관리 및 식품 생산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음.
- 생산방법은 천연 원료 및 공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특정 소비자의 선호도와 연관되는데, 윤작(crop rotation), 화학 농약 및 비료와 항생제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 GMO 금지, 농장에서 생산되는 거름이나 사료용 비료와 같은 자원의 적절한 사용 등과 같은 원칙을 따름.

❍ EU 내에서 유기농법 및 생산은 생산(production), 표시(labelling), 통제(control)와 수입(imports)에 관한 두 가지 시행 규정을 담고 있는 ‘유기 생산물의 생산 및 표시(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r organic products (834/2007))’ 규정의

적용을 받음.

- 또한 유기농 제품은 '일반 식품법(General Food Law (Regulation 178/2002))'을 준수하고, '공식통제규정(Official Controls Regulation (882/2004))' 범위 안에 있어야 함.
- 관련 조항들은 최근 2017/625규정에 의해 업데이트되었으며, 2019년 12월부터 해당 조항들을 시행할 예정임.

관련 공동농업정책의 대책

❍ 2014-2020년의 현재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라 검증된 유기농 생산 농민들은 유기농법 지향 및 유지를 위해 유기농 녹색지불금(Greening Payment)을 통한 추가 소득 지원과 농촌개발을 위한 EU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농촌개발을 위한 EAFRD의 유기농업에 대한 총 기여도는 7년 간 65억 유로(농촌 개발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 990억 유로의 약 6.5%)에 달하는 반면, 회원국들은 유기농업부문 발전 촉진을 위해 해당 정책체계 내에서 추가적인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음.

유럽시장의 빠른 성장

❍ 최근 유럽 유기농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ECA 보고서는 2010년과 2015년 간 소매 판매가격이 54%로 절반 이상 상승하였음을 강조함.
- 이전 IEG 정책 분석에서는 이미 유기농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다루었는데, 2016년 EU 시장의 매출은 307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7년 154억 유로의 두 배 이상을 나타내는 수치임.

❍ EU에서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는 전체 토지 크기는 2016년 동안 약 1/4 증가하여 2016년에 1,210만 헥타르로 증가하였음.

- 유기농식품의 가격은 기존 방식으로 생산되는 식품가격보다 높지만 많은 회원국

들의 유기농 시장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프리미엄은 사기성 유기농 판매를 장려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
- ECA 백서에 따르면 유기농(organic) 생산농민들이 비유기농(conventional) 생산농민에 비해 높은 시장가격을 받지만 공급망에서 생산되는 전체 부가가치 중 생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2018.03.02.)

EU집행위원회, 동물복지 지원 센터 설립

❍ 브렉시트 협상에서 동물복지와 관련한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EU집행위원회는 동물복지규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EU 복지센터를 설립하였음.

❍ 공개 선정과정을 거친 후, 네덜란드 Wageningen 가축연구소(Wageningen Livestock Research), 독일의 Friedrich Loeffler 기관 및 덴마크 Aarhus대학교의 동물공학부로 구성한 협력단(consortium)이 EU 동물복지 연구센터(EU Animal Welfare Reference Centre)로 3월 6일에 지정되었음.

- 센터는 동물복지부문 중 우선순위 중 하나로 돼지 관련 규정 시행이 개선됨에 따라 돼지의 복지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임.
-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센터는 EU 동물복지 시행 및 연구의 장점을 전파하는 데에 기여하고, 동물복지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등 공식적인 통제(controls)를 수행함에 있어 회원국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
- 또한 국가 과학지원 네트워크(national scientific support networks)의 직원과 국가 및 지역 당국, EU 이외 국가들의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임.

❍ EU 보건 및 식품 안전위원회(EU Health and Food Safety Commissioner) 집행위원 Vytenis Andriukaitis은 EU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음을 강조하며 센터 설립을 환영하였음.

- 또한 Andriukaitis는 센터가 EU의 동물복지 규정 적용과 모니터링을 위해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이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언급하였음.
- 동물복지연구센터의 창설은 공식통제규정(Official Controls Regulation (625/2017)) 하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관할 당국이 농산물 공급망에서 EU 식품 및 사료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상세 내용은 연간 및 다년간의 업무 프로그램에서 후에 정의될 예정임.

❑ 브렉시트 협상에서의 동물복지 규정 논의

❍ EU의 동물복지 규정과 이와 관련한 조항에 있어서의 영국과의 협력은 현재 진행 중인 브렉시트 협상에서 중요한 주제임.

- 2월 28일, EU집행위원회의 탈퇴 협정 초안 발표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Michel Barnier는 아일랜드 섬의 국경 검문 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의 동물 보건 규정(veterinary health)과의 완전한 일치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3월 2일, 영국 총리 Theresa May는 연설을 통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환경 및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한 국가 중 하나이며, 브렉시트 이후 적어도 EU의 기준만큼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해당 언급에 대한 반응으로 동물 의약품 및 백신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협회인 Animal Health Europe은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유럽의 동물 의약품부문에 있어 규제 당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동물의약품 가용성, 규제 및 안전성의 연속성에서 핵심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동물보건 및 복지에 대한 미래 혁신부문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생산에도 영향을 미침.
- 향후 동물보건 및 복지에 관하여 영국 규정과 EU 규정을 일치시키는 것은 무역

혼란의 최소화를 보장하고 동물의약품 산업과 Animal Health Europe의 제품이 지원하는 분야 모두에 대한 확실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동물복지에 관한 공동농업정책의 대책

❍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보호지침(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98/58/EC))은 동물 복지에 관한 EU의 주요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도 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포함됨.

- 공동농업정책의 농업인 대상 소득 지원은 최소 동물복지 기준(교차 준수)과 관련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회원국들은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s, RDPs) 하에서 자국 농민들에게 최소 지원금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할당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만으로도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동물복지 수당을 위한 EU 기금은 약 15억 유로에 달하며(전체 농촌개발프로그램 기금의 1.5%), 이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분야에 지출한 10억 유로와 비교되는 부분임.
- 현재 동물복지부문에 있어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감사를 시작한 EU 회계감사원은 이러한 동물복지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 NGO Voiceless는 이전에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동물보호 대책에 대한 평가서를 발표하였음.

- NGO Voiceless 기관의 '동물 학대 지수(Animal Cruelty Index)'에 따르면 독일은 이웃 국가인 오스트리아에 이어 가장 잔인하지 않은 동물 사육방식을 채택한 EU 회원국임.
- 반면, 네덜란드는 최악의 수행국가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높은 가축 도살 수치, 광범위한 육류 소비, 집중적인 돼지 및 가금류 생산시스템 때문임.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2018.03.09.)

EU, 와인 관련 제품의 무역 모니터링 체계 개선

❍ EU는 와인 제품과 관련하여 무역 모니터링 체계 개선, 원산지 및 특징(characteristics) 증명, 사기 행위 방지 및 해결을 목표로 새로운 두 가지 EU 와인규정을 시행함.

❍ 3월 1일부터 규정 (EU) 2018/273과 2018/274는 규정 (EU) 1308/2013에 명시되어 있는 기존 와인규정을 보완할 것임.

- 새로운 법안은 법적 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개선하고, 첨부서류, 포도원 등록부, 와인 제품증명서, 수입, 생산, 재고 증명, 포도 재배허가에 관한 규정을 단일 입법 패키지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우선, 새로운 규정은 첨부서류를 와인제품과 함께 동봉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와인제품의 추적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는 와인의 원산지,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등록 제품의 특징 및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와인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들은 다양한 와인 생산과정과 와인의 종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각 와인 제품 배치의 출입을 기록하는 등록부를 보관하여야 함.

❍ 이 규정에 포함된 또 다른 중요한 새로운 점은 제품의 원산지, 제품의 상태, 진품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수출인증서(multi-purpose export certificate)의 도입임.

- 이는 보호 상태, 포도 수확연도 및 포도 품종과 같은 와인에 관한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사용될 것임.

❍ EU 회원국들은 2020년 말까지 전자시스템 상에 첨부 서류와 수출증명서 모두를 통합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문서기반 절차에서 전자증명서 절차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업데이트된 규정들과는 별개로 EU의 와인산업은 광범위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음.

- 와인산업은 공동시장조직(Common Market Organisation (규정 1308/2013))의 특정 조항의 혜택을 받는데, 회원국들이 제품과 관련하여 5년간의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이는 공동농업정책(CAP)의 직접지불시스템의 지원을 받음.
- 게다가 EU는 EU의 총 와인 생산의 64%를 차지하는 1,114개의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nominations of Origin, PDOs)와 438개의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S)의 인정을 통해 양질의 와인을 보호함.

❑ 개정된 증류주 규정 시행

❍ 최근 증류주(spirit drinks)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후 와인 규정을 수정했으며, 해당 규정을 2018년 2월부터 시행하였고 제품 라벨링과 생산 방법에 관한 조항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수정한 첫 번째 규정은 사과 사이다와 배 기반의 페리에로부터 각각 독점적으로 증류한 '사이다 증류주'와 '페리 증류주'로 별개의 두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더해 '사이다와 페리 증류주'와 같은 새로운 음료 범주를 추가함.
- 해당 규정의 수정은 칼바도스(Calvados) 생산자들이 증류 전에 사이다에 페리(perry)를 첨가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기술적으로 100% 사이다 증류주도 100% 페리 증류주도 아님을 의미함) 증류주 규정(Spirits Drinks Regulation) 하에서 지리적 표시로 전통적인 프랑스 사이다 증류주 칼바도스(Calvados)의 분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수정한 두 번째 규정은 '과일 증류주' 범주에 관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과일이름에 다양한 유럽 언어로 접미사를 추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관행을 인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자두 증류주(plum spirit)는 크로아티아어로 'šljivovica', 체코어로 'slivovice', 폴란드어로 'liwowica', 루마니아어로 'liwowica', 슬로바키아어로 'slivovica', 슬로베니아어로 'slivovka'로 불림.

❍ 2008년에 처음 채택된 증류주 규정(Spirits Drinks Regulation)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규정과 함께 EU에서 증류주의 생산, 설명,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식품 표시 및 라벨링에 증류주의 이름 사용뿐만 아니라 수입을 포함한 유럽시장의 모든 증류주에 적용됨.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2018.03.09.)

폴란드와 발트3국, CAP 개혁 공동 비전 발표

❍ 폴란드와 발트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2020년 이후 농업 공동개혁에 관한 공동 비전을 제시함. 주요 내용은 공동농업정책(CAP), 직접지불의 완전한 융합에 대한 요구, 농촌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자발적인 공동 지원범위 확대 등임.

❍ 폴란드, 발트3국 농업부 장관은 3월 13일 라트비아에서 개최된 식량농업과 농업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함.

❍ 폴란드 농업부 장관 Krzysztof Jurgiel에 따르면 발표된 공동의견은 CAP 미래에 대한 발트3국 및 폴란드 농업부 장관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4개국의 정부, 의회,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함.

❍ 선언문에 따르면 각료들은 정책을 현대화하고 농민과 공공행정을 위한 기본 틀을 단순화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를 지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CAP 모델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설명함. 그러나 모든 농민들이 동일한 기준과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동일한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에 회원국 간 직접지불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회원국 간의 소득지원 불평등과 관련한 문제는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오랜 관심사이었음. 직접 지불 수급액은 단일구역 직접지불제도 하에서 단계적이며 점차적으로 적용되며 초기 EU회원국 15개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라트비아 농업부 장관 Jānis Dūklavs은 현재 차별화된 지원 수준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4개국 주정부가 EU 농업 및 수산위원회(European Agricultural and Fisheries Council)에 공동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회원국 간 직접지불액을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이는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과 평등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EU의 통합된 정책체계 아래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직접지불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수준의 기여하기 위해서는 달성해야 할 환경적 목표와 성과가 이용가능한 적절한 자금지원과 비례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폴란드와 발트3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직접지불제도가 농민들에게 효율적이고 간편한 제도임이 판명되었으며, 농업의 미래를 유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또 다른 요구사항은 국가가 농촌지역의 다양한 농업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자발적 자원이 유지되고 더 넓은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 농업정책 관련 명예교수인 Alan Matthews에 따르면 옴니버스 규정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공동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불우한 농업부문의 시장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정 작물 생산 증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수의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함. 또한 한 정책전문가에 따르면 한 회원국의 생산증대를 위한 지원은 모든 다른 회원국의 농업 생산과 농부들의 희생을 야기한다고 주장함.

❍ 폴란드와 발트3국은 공동시장기구(Common Market Organisation, CMO) 아래 설립된 보다 활동적인 도구 활용과, 위기 예방, 위험 관리를 위한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도입, 농업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한 안전망 확충 등에 관해 발표함.

❍ 폴란드와 발트3국 장관들은 3월 19일 EU 농업 및 수산위원회(European Agricultural and Fisheries Council) 회의에서 공동 성명과 관련된 내용을 EU 장관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임.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2018.03.15.)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